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5
----------	-------

발의연월일 : 2022. 4. 7.

발 의 자 : 태영호 · 정우택 · 김선교
유경준 · 김석기 · 조태용
김도읍 · 김미애 · 김예지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약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의견 공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

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제4호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제6항과 조례

에 따라 동(행정동을 포함한다)과 리(행정리를 포함한다)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나.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라.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을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 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제16조, 제27조,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제 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 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 명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 명 이상 포함(제4호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 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

다)되어야 한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
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
주하는 주민대표[「지방자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5
항·제6항과 조례에 따라 동
(행정동을 포함한다)과 리(행
정리를 포함한다)의 하부 조
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
한다]

4.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
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
간전문가

나.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민간전문가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③ (생략)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u>민간전문가</u> <u>라.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u> <u>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u> <u>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u>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 다)</u> 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u>장</u>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